
國民年金的 制度內容과 財政展望

閱 載 成

▷ 目 次 ◁

- I. 序
- II. 年金制度導入의 妥當性
- III. 國民年金の 基本構想과 主要內容
- IV. 年金財政計劃과 展望
- V. 結 言

I. 序

公的年金制度는 老齡, 障 碍, 死 亡 等으로 所得能力이 喪失되거나 減퇴되는 경우를 對 備하여 加 給 的 全 國 民을 對 象으로 平 生 貯 蓄을 制 度 化 함으로써 他 們의 生 活 安 定을 追 求하려는 데에 그 基 本 目 的이 有 效하다. 이 外에도 公的 年 金 制 度의 導 入과 定 着은 我 國 社 會의 安 定 基 盤 强 化에 大 功을 立 功하고 經 濟 發 展의 中 核 的 目 標인 福 祉 社 會 建 設을 實 現 시키기 爲 期 待 된다.

이 如 此한 社 會 的 必 要에 應 對하여 政 府는 19

筆 者 : 本 院 研 究 委 員

73年에 年 金 制 度 導 入에 必 要한 立 法 措 置까지 未 然 化 였 으나 石 油 波 動으로 因 한 物 價 上 昇 等의 理 由으로 制 度의 施 行이 今 日 까지 保 留 되 어 有 效하다.

그 外에 同 時 間 國 民 所 得 水 準이 均 等 上 昇 되 어 來 고 1982年 以 後 物 價가 大 體 安 定 되 어 國 民 年 金 制 度의 導 入 與 件이 成 熟 되 고 有 效하다.

本 研 究은 年 金 制 度 實 施에 關 한 外 國의 事 例를 深 層 分 析 하고 顯 在 化 되 고 有 效한 福 祉 欲 求를 考 慮 而 後 我 國의 經 濟 社 會 的 與 件에 適 應 할 수 有 效 하다고 認 定 된 年 金 模 型을 構 想 하 였 으 며 以 後 年 金 財 政의 長 期 推 計와 經 濟 社 會 的 波 及 效 果를 分 析 하 였 다. 즉, 第 Ⅱ 章 中에서는 制 度 導 入의 必 要 性을 檢 討 하 고, 第 Ⅲ 章 中에서는 國 民 年 金의 制 度 模 型을 考 察 한 基 本 視 角을 記 述 하 고 適 用 對 象 範 圍, 給 與 內 容, 及 年 金 財 政에 關 한 論 議 하 였 다. 年 金 給 與 內 容은 國 民 福 祉 年 金 法(1973年)과 的 差 異 點을 中 核 的 으로 比 較 說 明 하 였 고 以 外 未 來 給 與의 所 得 再 分 配 效 果와 現 行 退 職 金 制 度와 的 收 益 性 比 較 分 析도 試 圖 하 였 다. 第 Ⅳ 章 中에서는 財 政 運 用

方式과 財源調達計劃을 설명하고 年金給與內容과 財源調達計劃에 입각한 將來의 財政推計를 시도하였다. 끝으로 第V章에서는 앞으로 實施할 國民年金制度의 重要 政策方向과 예상되는 問題 및 課題에 대하여 論議하였다.

II. 年金制度導入의 妥當性

年金制度導入의 必要性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側面을 重點적으로 檢討하였다. 즉 人口構造의 變化에 따른 우리나라 老人人口의 增加推移와 이들의 生活實態, 둘째 老後生計保障을 위한 現行制度의 運營實態, 그리고 세째는 現社會經濟的 與件을 감안한 實施時期 등이다.

1. 老人人口의 增加와 社會的 危險의 增大

우리나라의 60세이상 老人人口 比重은 1986년 현재 6.8%에서 2000년에는 10.0%, 2040년에는 25.0%로 急増할 전망이다. 이는 醫學技術의 발달에 따른 平均壽命의 延長과 出産率의 저하로 老齡化速度가 先進國에 비해 급속히 進行되고 있기 때문이다(表 1 및 表 2 참조).

한편 60세이상 老人의 生活實態를 보면(表 3 참조) 이들중 대다수의 老人이 老後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어 대부분 子女들에게 生計를 依存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産業化에 따른 都市化와 核家族化의 傾向은 젊은 계층들의 老人扶養意識을 弱화시키고 있어 우리의

傳統의 生活樣式을 變化하게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工業化와 都市化의 進行은 死亡, 疾病 등 事故로 인한 所得喪失의 危險이 加重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973~85년간 産業災害 및 交通事故의 被害人員은 각각 年平均 7.5%, 11.8%로 높게 增加하고 있다(表 4 참조).

〈表 1〉 老齡人口의 增加推移

(단위: 千名)

| | 1973 | 1986 | 2000 | 2040 |
|-----------------------|--------|--------|--------|--------|
| 人 口(A) | 34,103 | 41,569 | 48,017 | 53,180 |
| 60歲以上人口(B) | 1,775 | 2,825 | 4,781 | 13,295 |
| B/A(%) | 5.2 | 6.8 | 10.0 | 25.0 |
| 被 扶 養 率 ¹⁾ | 10.4 | 9.3 | 6.7 | 3.2 |

註: 被扶養率=15~59歲 人口/60歲以上 人口
資料: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KDI 推計.

〈表 2〉 人口의 老齡化速度比較

(단위: 年)

| | 65歲以上 人口比 率의 到達年度 | | 所要年數 |
|-------|----------------------|------|------|
| | 5% | 12% | |
| 韓 國 | 1993 | 2022 | 29 |
| 日 本 | 1950 | 1990 | 40 |
| 美 國 | 1925 | 1990 | 65 |
| 프 랑 스 | 1790 | 1965 | 175 |

資料: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日本厚生省, 『厚生白書』, 1985.

〈表 3〉 各國 老人의 所得源實態(1983)

(단위: %)

| | 韓國 | 日本 | 美國 | 英國 |
|---------|------|------|------|------|
| 就 業 | 21.8 | 41.0 | 27.3 | 11.6 |
| 公 的 年 金 | 1.7 | 64.6 | 82.1 | 87.7 |
| 企 業 年 金 | — | 8.4 | 27.1 | 35.5 |
| 貯蓄및財產 | 9.0 | 27.0 | 67.1 | 28.3 |
| 子女依存 | 78.2 | 29.8 | 2.4 | 1.7 |
| 其 他 | 5.7 | 7.5 | 11.6 | 20.0 |

註: 所得源의 百分比가 아니며 한 項目 이상의 所得源이 있는 경우 重複計算된 것임.
資料: Gallup報告, 『各國老人意識調查』, 1983.

2. 老後生計保障을 위한 現行制度의 未備

우리나라의 현행 公的年金制度는 公務員, 軍人, 私立學校教職員 등 일부 階層에만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1984년 현재 全體就業者(軍人 제외)의 5.6%에 불과하다¹⁾.

한편 16인이상 事業場의 一般勤勞者에게 적용되는 현행 退職金制度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老後生計保障對策이 되지 못하고 있다²⁾. 첫째, 全體退職者의 97.6%가 50세이전에 退職金을 一時金으로 지급받고 있어 停年後의 老後生計保障이 되지 못하고 있다(60세이상 退職者의 比率은 0.1%에 불과함(表 5 참조)). 둘째, 실사 長期勤續者가 목돈(一時金)을 받을 수 있어도 退職金의 대부분은 子女教育 및 結婚費用, 住宅購入 등에 消盡되어 버리고 老人의 安定的인 所得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企業의 年輪이 길어짐에 따라 累積退職金의 規模가 증대³⁾하고 있으며 支給保障制度의 미비로 企業倒産時 支給不能事態가 發生하고 있다(退職金 중 社外積立金은 9.9%에 불과함). 넷째 勤勞者의 死亡, 障病發生時 이들이 扶養하던 配偶者, 遺子女 및 障病者에 대한 生計保障機能이 없다. 다섯째, 현행 退職金의 算定方式은 低學力·

1) 總務處·國防部·私立學校教員年金管理公團 內部資料 및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5.

2) 閔載成·朴宰用, 『退職金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韓國開發研究院, 1984 및 韓國經營者總協會, 『退職金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1978. 12.

3) 企業資本金에 대한 累積退職金의 比率은 本院 調査(1983년)에 의하면 18.6%, 經營者協會 調査(1973년)에 의하면 8.8%이다. 또한 資本金 對比 累積退職金이 100%이상인 企業이 14.4%, 勤勞者는 16.3%를 차지하고 있다. 閔載成·朴宰用, 前揭書, pp. 59~63 참조.

生産職勤勞者보다 高學力·事務職勤勞者에 有利하게 되어 있어 이들간의 所得隔差를 深化시키고 있다.

3. 實施與件의 成熟

國民福祉年金法이 導入된 1970년대에는 物價가 年平均 16%씩 上昇하였으나 1982년 이후에는 年平均 上昇率이 3~4%水準으로 크게 安定됨에 따라 長期年金制度의 실시가 가능해지고 있으며 또한 所得水準도 1人當 國民所得이 1973년에는 396弗이었으나 1986년에는 2000弗水準으로 향상되고 있어 勤勞者 및 企業의 年金齟出金의 負擔能力이 提高되고 있다. 先進國의 經驗에 비추어 볼 때 資本主義經濟體

〈表 4〉 産業災害 및 交通事故 推移

| | 1973 | 1980 | 1985 | 年平均增加率(%) |
|---------|--------|---------|---------|-----------|
| 産業災害 | | | | |
| 事故人員(名) | 59,367 | 113,375 | 141,809 | 7.5 |
| 指數 | 100 | 191 | 239 | |
| 交通事故 | | | | |
| 事故人員(名) | 48,370 | 118,883 | 184,420 | 11.8 |
| 指數 | 100 | 246 | 381 | |

資料: 勞動部, 『産災保險年報』, 各年度.
交通部, 『交通統計年鑑』, 各年度.

〈表 5〉 年齡別 退職金受給現況 (단위: %)

| | 退職金受給人員構成 | | |
|-------|-----------|-------|-------|
| | 男 | 女 | 計 |
| 17歲以下 | 0.4 | 3.6 | 1.9 |
| 18~29 | 48.7 | 88.8 | 67.4 |
| 30~49 | 46.8 | 7.2 | 28.3 |
| 50~59 | 3.9 | 0.5 | 2.3 |
| 60歲以上 | 0.2 | 0.0 | 0.1 |
| 計 | 100.0 | 100.0 | 100.0 |

資料: 韓國開發研究院 調査(1983年).

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公的年金 制度의 導入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우리 經濟는 國民所得水準으로 볼 때 세계의 中位圈에 이르고 있으나 社會的 安定을 유지할 社會保障의 根幹인 年金制度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어 制度導入이 늦은 감이 있다.

즉, 1985년 현재 1人當 國民所得이 2000弗이상인 40個 국가중 老後生計를 위한 社會保障制度가 없는 나라는 韓國, 오만, 아랍에미레이트뿐인 것으로 調査되고 있다(表 6 참조).

특히 就業階層의 年齡構造를 감안할 때 「베이비 붐」世代가 1980년대 중반 이후 勞動市場에 이미 進入하고 있으므로 이 階層의 年金加入期間을 최대한 늘려야 年金財政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80년대중에는 年金制度의 早期導入이 바람직한 것으로 評價된다(表 7 참조).

Ⅲ. 國民年金의 基本構想과 主要內容

1. 基本視角

우리나라의 經濟社會的 與件의 變化, 先進國들의 經驗, 그리고 우리 經濟의 負擔能力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公的年金制度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 (1) 老人 및 勤勞能力喪失者의 基本生計 維持에 必要한 給與水準을 유지할 수 있는 制度의 構成
- (2) 장기적으로 年金財政安定을 이룩할 수

〈表 6〉 老後所得保障制度 實施現況¹⁾(1983)

| 1人當所得水準(弗) | 社會保險制度 | 社會扶助制度 ²⁾ | 複合制度 | 未實施 ³⁾ |
|--------------|--------|----------------------|------|-------------------|
| 2,000~3,000 | 7 | 1 | — | 1 |
| 3,000~5,000 | 3 | — | — | — |
| 5,000~10,000 | 8 | 1 | 4 | 1 |
| 10,000 以上 | 10 | — | 3 | 1 |
| 計 | 28 | 2 | 7 | 3 |

註: 1) 共產圈을 除外하고 所得水準이 2,000弗以上인 40個 國家를 基準.

2) 社會扶助制度만 實施하는 나라는 남아프리카와 홍콩임.

3) 未實施國은 韓國,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3個國임.

資料: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5;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83*, 1984.

〈表 7〉 年金實施時點別 人口構造

(단위: %)

| 年金實施時點 | 1988 | 1993 | 2000 |
|-----------------------------|------|------|------|
| 加入階層人口比率 ¹⁾ | 74.2 | 72.7 | 68.9 |
| 制度成熟時 年金受給者比率 ²⁾ | 23.8 | 26.8 | 28.3 |

註: 1) 15歲以上 44歲未滿 男性人口/15歲以上 男性人口

2) 制度成熟은 年金實施時點 以後 40年 經過時點을 지칭하며, 年金受給者比率은 60歲以上 男性人口/15歲以上 男性人口

資料: 經濟企劃院 및 韓國開發研究院 人口推計 資料.

있는 年金模型의 開發

(3) 國民經濟의 增겨을 最小化하기 위하여 釀出金 및 給與水準의 점진적인 調整을 통한 年金制度의 安定的 定着을 誘導

(4) 低所得階層의 生活安定을 위하여 所得 再分配機能을 부여함으로써 衡平分配에 寄與

(5) 年金基金의 收益性, 安全性, 公益性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裝置를 모색하고 基金資産의 운용은 公共住宅建設 등 國民 福祉提高事業에 우선적으로 活用

2. 適用對象範圍

國民年金의 適用範圍는 18세이상 60세미만 의 全就業階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年金加入對象者는 賃金實態의 把握이 가능한 10인이상 事業場부터 強制 實施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實施初期의 自營者 및 農漁民은 任意加入토록 한다. 그러나 既存 公的年金(公務員, 軍人 및 私立學校教職員年金)의 受惠者는 適用對象에서 제외하되 本制度의 成熟과 함께 制度間 年金額을 通算할 수 있는 制度를 마련한다(表 8 참조).

3. 給與種類와 年金額算定方法

國民年金制度의 給與種類로는 一定期間(15 年부터 20년이상) 加入後 受給年齡⁴⁾(통상 60 歲)에 달할 때 支給하는 老齡年金, 加入期間 中 발생하는 障害로 勤勞能力喪失時 지급하는 障害年金, 年金加入者나 受給權者의 死亡時 그에 의하여 扶養하던 遺族에게 지급하는 遺族年金 그리고 加入者가 노동시장에서 中途에 脫退할 때에 지급하는 返還一時金으로 하였다. 그리고 年金額算定은 老齡年金額을 基本 으로 하였으며, 老齡年金의 경우 基金年金額 과 加給年金額을 合算하여 年金額을 決定하도 록 하였다. 이와 같은 給與內容은 現行法(19 73年 制度)에 비해 給與構造 및 給與水準을 相當部分 變更시킨 것이며, 給與種類에 있어 서도 우리나라의 勞動行態와 與件을 감안하여 修正・補完한 것이다.

가. 基本年金額

基本年金額은 社會保障의 均等部分과 報酬 連動의 比例部分으로 구성된다. 즉, 均等部分 은 加入者 個人의 所得水準에 관계없이 全加入

〈表 8〉 10人以上 事業體勤勞者 現況

(단위 : 千名)

| 總 就 業 者 (A) | 全事業體勤勞者 (B) | 10人以上事業體 勤勞者(C) | % | |
|---------------------|----------------|--------------------|------|------|
| | | | C/A | C/B |
| 14,417 ^D | 4,023 | 3,695 | 25.6 | 91.8 |

註 : 1) 全人口對比 35.5%임.

資料 : 勞動部, 『事業體 勞動實態調查報告書』, 1984.

4) 國際적으로 보면, 受給年齡이 50~55세인 경우는 男 21個國, 女 48個國, 56~60세인 경우는 男 48個國, 女 37個國, 61~65세인 경우는 男 32個國, 女 17個國, 66~70세인 경우는 男 5個國, 女 4個國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女性의 受給年齡이 낮은데, 本年金案에서는 男女 共히 60세로 하였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83*, 1984).

者の 平均月報酬額을 기초로 하고, 比例部分은 加入者 個人的 全加入期間 平均報酬月額을 기초로 한 것이다. 現行法(1973年)의 경우 比例部分은 加入期間中 最終 3年間의 加入者 平均標準報酬月額에 의해서 算定하였다. 이는 退職時의 生計水準을 어느 정도 維持시키려는 必要(need)充足의 立場을 反映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最終報酬基準方式은 과거 加入期間 동안의 報酬 즉, 職務生涯 동안의 生産業績(給與에 부응하는 적정한 釀出)을 고려하지 않게 되며, 退職當時의 報酬水準이 과거 加入期間 동안의 報酬水準보다 특히 높거나 낮아진다면 年金財政健全性의 立場에서나 加入者 個人的 立場으로 볼 때 衡平을 缺如하게 되므로 全加入期間 平均報酬를 基準으로 給與함이 바람직하므로 이를 修正하였다⁵⁾. 이에 따라 基本年金額의 給與算式을 數式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4(A+B)(1+0.05n)$$

여기서,

2.4 : 240개월(20년)의 給與水準 加重值

A : 受給前年度의 全加入者 平均報酬月額

B : 加入者 個人的 全加入期間 平均報酬月額

n : 20年超過 加入年數

그런데 本算式은 勞使의 釀出料率이 10%일 때를 基準으로 한 것이며, 10%보다 낮은 釀出期間(1988~99년)⁶⁾에 대해서는 B의 算定을 釀出料率 水準에 따라 評價하게 된다. 즉, B의 算定은 다음과 같다.

$$B = \sum_{t=1}^n WG(t) \cdot \frac{RC(t)}{10\%} / n$$

WG(t) : t時點의 報酬

RC(t) : t時點의 釀出料率(%)

n : 加入期間

여기서 WG(t)는 年金受給時點에서 實質價値가 保障될 수 있도록 定期的으로 再評價한다. 이렇게 B를 算定함으로써 釀出과 給與의 連繫性을 도모⁷⁾하여, 世代間 負擔의 衡平을 기하고 年金財政의 安定性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自營者 및 農漁民 등이 申請에 의해서 單獨으로 負擔하여 加入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釀出金은 全加入者 報酬分布上의 中央值(median)를 기준⁸⁾하여 徵收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年金額도 受給當時의 勤勞者報酬의 中央值를 기준하여 基本年金額이 算定되도록 하였다.

나. 加給年金額

加給年金은 年金生活者의 扶養家族生計費를 補助하려는 목적으로 設置된 것이다. 따라서

5) C.R. Henderson, "A Better Pension Program", *Harvard Business Review*, XXX, Jan. 1952, pp. 62 ~65 참조

6) 釀出計劃에 대해서는 第IV章 참조.

7) 論理的으로 보면, 이 경우 均等部分도 比例部分과 동일한 方法으로 釀出料率에 比例하여 調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公의年金이 基本生計費를 保障한다는 社會保障의 觀點에서 均等部分은 釀出料率에 獨立的으로 調整하지 않았다. 結果的으로 낮은 釀出料率을 부담하는 年金制度導入 初期加入階層은 次後의 加入階層에 比하여 더 많은 年金惠澤을 받게 될 것이다.

8) 本年金算式의 構造上 低所得者일수록 有利한 給與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任意加入의 경우 低所得階層으로 加入하려는 경향이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 當然加入者의 財源이 任意加入者에게로 移轉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措置인 것이다. 한편 任意加入者에 대한 所得實態把握이 가능하게 되면 이러한 措置는 필요없을 것이다.

受給對象을 모든 年金受給者⁹⁾에게 給與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다. 그리고 加給年金의 支給方法에는 定額制와 定率制가 있는데 本研究에서는 加入者의 所得水準과 關係없이 一定한 金額을 支給하게 함으로써 加給적이면 所得再分配機能을 발휘할 수 있도록 提案하였다.

다. 老齡年金

老齡年金은 年金制度의 中心的인 給與種類로서 受給資格要件 즉, 加入期間, 支給開始年齡 또는 在職與否에 따라서 完全老齡年金, 減額老齡年金, 在職者老齡年金 및 特例老齡年金으로 나눌 수 있는데(表 9 참조) 本研究에서는

〈表 9〉 老齡年金의 種類와 年金額水準

| | 加入期間 | 支給開始 年齡(세) | 在職與否 | 年金額算定基準 |
|---------|--------------|-------------------|------|---|
| 完全老齡年金 | 20년이 상 | 60(55) | 退職時 | $2.4(A+B)(1+0.05n)^{11}$ + 加給年金額 ²⁾ |
| 減額老齡年金 | 15~20년 미만 | 60(55) | 退職時 | $2.4(A+B)(0.725+0.05n'')^{11}$ + 加給年金額 ²⁾ |
| 在職者老齡年金 | 20년이 상 | 60(55)~ 65(60) | 在職時 | 基本年金額 ¹⁾ × {0.5 + 0.1(x-60)} + 加給年金額 ²⁾ (x ≥ 65歲이면 x=65) |
| 特例老齡年金 | 5~15년 미만 | 60(55) | 退職時 | 基本年金額 ¹⁾ × {0.25 + 0.05(54-m) ¹¹ } + 加給年金額 ²⁾ (단 5년미만은 一時金 또는 加入資格 延長) |

註: ()안은 抗內夫의 年齡임.

- 1) A: 受給前年度 全加入者 平均報酬月額
B: 加入者 個人의 全加入期間 平均報酬月額
n: 20年超過 加入年數
n': 15年超過 加入年數
m: 制度施行當時의 年齡
- 2) 配偶者 月 5천원, 子女 1人當 月 3천원.

〈表 10〉 各國의 加入期間別 年金額水準¹⁾ 比較

(단위: %)

| | 20년 | 25년 | 30년 | 35년 | 40년 |
|-------------------|------|------|------|------|------|
| 韓 國 ²⁾ | 40.0 | 50.0 | 62.0 | 76.0 | 92.0 |
| 日 本 ³⁾ | 40.0 | 50.0 | 60.0 | 70.0 | 75.0 |
| 西 獨 ⁴⁾ | 40.5 | 50.6 | 60.8 | 70.9 | 81.0 |
| 英 國 ⁵⁾ | 38.2 | 47.7 | 57.3 | 66.8 | 76.4 |

註: 1) 年金額水準은 年金額/報酬比임.

- 2) 給與算式(1973년 制度)은 $2.4 \times$ 受給前年度 全加入者 平均月報酬 + 最終 3年間 平均月報酬 $\times (2.4 + 0.01 \times 20$ 年超過 加入月數) $(1 + 0.04 \times 20$ 年超過 加入年數)
 - 3) 給與算式은 (2,050엔 \times 加入月數 + 平均報酬月額 $\times 0.01 \times$ 加入月數)
 - 4) 給與算式은 一般算定基礎額 \times 個人算定基礎額 $\times 0.015 \times$ 加入年數
 - 5) 給與算式은 基本年金額 + (加入者 報酬平均月額 - 基本年金額) $\times 0.25 \times (1 + 0.05 \times 20$ 年超過 加入年數)이고 여기서 基本年金額은 定額(基礎部分 + 配偶者加算部分) \times 加入年數/44年
- 資料: 日本 社會保險研究所, 『目でみる年金』, 1985;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85;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p. cit.*, 1984.

9) 國民福祉年金法(1973年 制定)에서는 老齡年金中 在職者 및 減額老齡年金의 경우 加給年金을 除外하고 있다.

現行法(1973年)上の 給與水準과 支給方法을 制度間의 連繫性을 考慮하여 일부 改善하고 우리나라 企業의 55歲 停年制를 감안하여 早期老齡年金을 支給할 수 있도록 追加하였다.

1) 完全老齡年金

加入期間 20年이상, 60歲(단, 坑內夫는 55歲)에 달하고 퇴직한 때 年金을 支給하는 것으로서 앞서의 基本年金額算式이 이에 해당한다. 現行法(1973年)의 年金水準은 各國의 老齡年金水準(表 10 참조)에 비해 높은 水準에 있기 때문에 制度의 長期的 發展을 考慮하여 給與水準을 調整引下하였다. 즉, 現行法에 의한 給與算式은 $2.4A + B \cdot (2.4 + 0.01 \cdot n') \cdot (1 + 0.04 \cdot n)$ 이었다.

〈表 11〉 年金受給者의 報酬水準에 따른 年金月額推定

(단위: 1984년 不變價格, 千원)

| 加入期間 報酬水準 | 20년 | 30년 | 40년 |
|-------------------|------------|------------|--------------|
| 136 ²⁾ | 177(309) | 419(470) | 702(702) |
| 183 ²⁾ | 192(416) | 458(634) | 931(947) |
| 284 ³⁾ | 227(668) | 550(1,018) | 1,126(1,520) |
| 514 ⁴⁾ | 298(1,170) | 734(1,782) | 1,514(2,662) |

註: 1) 1984년도 勤勞家計의 下位 0~25% 所得階層의 平均所得.

2) 1984년도 勤勞家計의 下位 25~50% 所得階層의 平均所得.

3) 1984년도 勤勞家計의 上位 25~50% 所得階層의 平均所得.

4) 1984년도 勤勞家計의 上位 0~25% 所得階層의 平均所得.

()안의 숫자는 最終報酬 水準임.

* 最終報酬는 本年金模型財政推計時 사용한 期間別 實質賃金上昇率을 각 所得階層에 적용하였고 年金受給額은 老齡年金算式에 의거 推計.

資料: 韓國開發研究院 推計.

10) 推定方法에 관하여는 閔載成 外, 『國民年金制度의 基本構想과 經濟社會 波及效果』, 韓國開發研究院, 第 8 章, 1986. 9 참조.

11) 여기서 賃金代替率이란 年金受給資格 積存의 最終月 報酬額 對比 年金受給額을 의미한다.

여기서,

A: 受給前年度 全加入者 平均月報酬

B: 最終3年間 平均月報酬

n': 20年超過 加入月數

n: 20年超過 加入年數

그러나 本研究의 算式은 1973年 制度에 비해 均等部分을 強調하고 比例部分을 縮小함으로써 所得再分配效果를 擴大한 반면 長期加入에 따른 給與水準의 지나친 上昇을 抑制하도록 하였다.

本算式(基本年金額)과 後述하는 釀出計劃에 따른 年金受給者의 報酬水準을 기초로 하여 年金受給額을 推定¹⁰⁾한 결과 〈表 11〉과 같이 報酬水準이 낮은 階層은 상대적으로 높은 階層보다 年金額을 더 받게 됨으로써 加入者 階層間의 所得分位別 賃金代替率¹¹⁾(表 12 참조)을 보면, 20년 加入者의 경우 所得 I 分位는 57.3%이나 所得水準이 높아질수록 代替率은 낮아져 第 II 分位 46.2%, 第 III 分位 34.0%, 第 IV 分位 25.4%의 水準을 나타내며 全體平均은 40.7%에 이른다.

이러한 效果는 30년, 40년의 長期加入者間

〈表 12〉 所得分位別 賃金代替率¹⁾

(단위, %)

| 所得分位 | 20년 | 30년 | 40년 |
|-----------------------|------|------|--|
| I (下位 25% 階層) | 57.3 | 89.0 | 100.0 ²⁾ (120.7) ³⁾ |
| II (下位 25~50% 階層) | 46.2 | 72.2 | 98.3 |
| III (上位 25~50% 階層) | 34.0 | 54.1 | 74.1 |
| IV (上位 25% 階層) | 25.4 | 41.2 | 56.9 |
| 平均 | 40.7 | 64.1 | 82.3 (87.5) ³⁾ |

註: 1) 年金受給前年度 月報酬額 對比 年金月額.

2) 賃金代替率 上限 100% 적용 경우임.

3) ()안의 數値는 上限 不適用時 賃金代替率을 나타냄.

에도 동일한 類型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賃金代替率은 加入期間에 正比例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平均적으로 보아 20년 가입의 경우 40.7%, 30년 가입 경우 64.2%, 40년 가입 경우 82.3%로 加入期間이 길어질수록 비례적으로 높아져 長期加入에 따른 不利益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長期加入에 따른 賃金代替率의 上昇幅은 低所得分位일수록 크므로 低所得分位の 長期加入이 高所得分位の 長期加入보다 有利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所得再分配效果는 內部收益率分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方法은 年金受給 開始年度를 基準時點으로 하여 所得階層別로 全加入期間 동안 拂入한 釀出料 總額을 계산하고, 이를 年金受給 全期間 동안에 期待되는 年金受給額의 割引現價의 總額과 비교함으로써 年金拂入額의 收益率을 所得階層別로 比較分析할 수 있다¹²⁾.

推定結果(表 13 참조) 20年間 年金에 加入한 勤勞階層의 平均內部收益率은 15.4%로서

이는 同期間의 平均利率로 假定된 8.7%에 비해 훨씬 높은 收益率을 보이고 있다. 所得階層別로는 第Ⅰ分位の 경우 17.5%로 나타났으며, 高所得分位일수록 內部收益率은 낮아져 第Ⅳ分位の 경우 13.2%에 이르고 있다. 이 결과는 本年金模型에 內在되어 있는 所得再分配 기능을 반영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高所得階層인 第Ⅳ分位の 경우에도 期待되는 內部收益率이 平均銀行利率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만일 年金基金運用收益率이 同銀行利率 정도에 머무를 경우 年金釀出에 비해 受給額이 모든 所得階層에서 더 크므로 本研究에서 제안하는 年金模型이 계속될 경우 基金의 赤字를 유발할 可能性이 있음을 豫告하는 것이다. 이러한 所得再分配效果는 加入期間이 30년, 40년의 경우에도 동일한 類型으로 나타난다. 만약 制度成熟時의 標準的 加入者가 所得Ⅲ分位에 加入期間이 30년이던 基金收益率이 12% 정도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表 13>의 괄호 속의 數値는 年金釀

〈表 13〉 所得階層別 內部收益率

(단위: %, 倍)

| 所得分位 | 加入期間 ¹⁾ | | | 美國의 公的年金 ²⁾ | 日本의 公的年金 ²⁾ |
|------|-------------------------|-----------|-------------------------|------------------------|------------------------|
| | 20년 | 30년 | 40년 | | |
| 平均 | 15.4(3.8) ³⁾ | 12.7(3.6) | 11.2(3.3) | 10.6 | 15.5 |
| I | 17.5(5.4) | 13.9(5.1) | 11.7(4.0) ⁴⁾ | 20.6 | 21.4 |
| II | 16.3(4.3) | 13.2(4.1) | 11.7(4.0) | 12.7 | |
| III | 14.7(3.2) | 12.2(3.1) | 10.9(2.9) | 10.3 | 14.3 |
| IV | 13.2(2.4) | 11.3(2.3) | 10.3(2.3) | 8.1 | |

註: 1) 年金拂入期間別 平均利率은 20年 加入者의 경우 8.7%, 30年 加入者의 경우 8.4%, 40年 加入者의 경우 8.2%로 假定하였다.

2) 美國의 數値는 1970년도 男子 受給者를 基準으로 하였으며, 日本의 數値는 1981년도 男子 受給者를 基準으로 下位와 上位階層의 收益率을 나타낸다(地主重美, 「社會保障への經濟的アプローチ」, 『季刊・社會保障研究』, Winter 1984.).

3) ()안의 數値는 年金釀出金總額 對比 年金給與割引現價 給與額의 倍率을 나타낸다.

4) 賃金代替率 上限 100% 適用對象階層.

12) 分析方法의 상세한 논의는 閔載成外, 前掲書, 第8章 참조.

出金對比 年金給與額 割引現價比率을 나타내고 있는데, 20년 가입자의 경우 年金給與額 割引現價가 釀出金額에 비해 平均的으로 3.8배, 30년 가입자의 경우 3.6배, 40년 가입자의 경우 3.3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高所得層의 경우도 年金割引現價가 釀出金額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所得再分配效果는 均等部分의 相對的 크기에 비례한다. 本模型에서 推計된 給與額中 均等部分과 比例部分의 構成比를 보면 <表 14>와 같다.

한편 本研究에서 제안한 年金模型에 內在되어 있는 爭點中의 하나가 退職金額과 年金受給額간의 비교이다. 즉, 勤勞階層에게 國民年金制度가 現行退職金制度보다 有利한 制度인가의 立證이 論爭의 焦點이다. 推定結果¹³⁾(表 15 참조) 全所得階層에서 年金의 割引現價總額이 退職金額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20년 加入者의 경우를 예로 들면, 所得 I 分位の 경우 무려 5.5배에 달한다. 이러한 倍率은 所得水準이 높아갈수록 낮아지나 중요한 점은 高所得階層의 경우에도 退職金額보다 年金의 總割引現價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한편 加入期間에 따른 總年金給與現價의 退職金額에

대한 倍率은 미미한 減少現象을 보이나 모든 所得階層에서 倍率이 1을 넘어 年金制度가 退職金制度보다 加入勤勞階層에 有利함을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本研究의 釀出計劃 第 I 案은 既存退職金制度에서의 代替分이나 加入者의 新規負擔分은 현실적으로 勤勞者의 歸屬分이라 할 수 있으므로 退職金制度和 年金制度와의 直接比較가 가능하나, 第 II 案의 경우에는 年金制度의 導入으로 企業의 追加負擔分이 새로이 발생된다는 관점에서 第 I 案에 비하여 勤勞者에게는 더욱 有利한 制度라 할 수 있다. 즉, 使用者의 新規追加負擔分에 相應하는 新規惠澤이 勤勞者에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表 15의 괄호안의 數值 참조). 그런데 年金과 退職金간의 比較分析上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退職金은 一時金으로 지급되므로 목돈의 活用に 따른 期待收益이 큰 경우에는 退職金을 선호할 수도 있다. 둘째, 退職金算定の 基準報酬額은 特定手當 등을 더 포함할 수도 있으므로 退職金의 價値가 過小評價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年金의 割引現價推計時 割引率로서 銀行利子率을 사용하였는데 현실적으로는 勤勞者의 主觀的 割引

<表 14> 均等部分과 比例部分의 構成比

(단위 : %)

| 所得階層 | 20년 | | 30년 | | 40년 | |
|------|------|------|------|------|------|------|
| | 均等 | 比例 | 均等 | 比例 | 均等 | 比例 |
| I | 73.5 | 26.5 | 71.8 | 28.2 | 70.9 | 29.1 |
| II | 67.3 | 32.7 | 65.3 | 34.7 | 64.4 | 35.6 |
| III | 56.2 | 43.8 | 55.6 | 44.4 | 53.0 | 47.0 |
| IV | 42.3 | 57.7 | 41.5 | 58.5 | 39.1 | 60.9 |

13) 推定方法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閔載成外, 前掲書, 第 8 章 참조.

<表 15> 退職金額 對比 年金割引現價의 比較

(단위 : 倍率)

| 所得分位 | 20년 | 30년 | 40년 |
|------|------------------------|----------|------------------------|
| I | 5.5(7.1) ¹⁾ | 5.3(6.6) | 4.2(5.1) ²⁾ |
| II | 4.5(5.7) | 4.2(5.2) | 4.1(5.0) |
| III | 3.3(4.2) | 3.2(3.9) | 3.1(3.8) |
| IV | 2.5(3.1) | 2.4(3.0) | 2.4(2.9) |

註 : 1) ()안의 數値는 第 II 案의 경우 新規追加負擔率 1.5%를 年金導入에 따른 加入者의 惠澤으로 간주하여(즉, 年金이 導入되지 않으면 勤勞者가 얻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退職金額에서 追加負擔에 相應하는 金額을 減額하여 推計한 倍率임.

2) 賃金代替率 上限 100% 適用對象階層임.

률이 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2) 早期老齡年金

이 制度는 老齡年金의 受給資格年齡인 60세 이전에 退職하여 生計가 곤란한 加入者를 위하여 一般的 停年年齡인 55세부터 年金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現行法에는 없는 제도이다¹⁴⁾. 그러나 加入期間要件은 完全老齡年金과 같으며 다만 受給期間이 길어지므로 給與水準의 形평을 고려하여 調整하였다.

즉, 早期老齡年金의 給與算式은 다음과 같다(表 16 참조).

$$2.4(A+B)(1+0.05n)\{15+(x-55)\}/20$$

여기서 x 는 受給時 年齡

〈表 16〉 早期老齡年金(給與水準)

| 年 齡 | 給 與 水 準 |
|-----|------------|
| 55세 | 基本年金額의 75% |
| 56세 | 基本年金額의 80% |
| 57세 | 基本年金額의 85% |
| 58세 | 基本年金額의 90% |
| 59세 | 基本年金額의 95% |

完全老齡年金 受給者의 초기수급시(제도시행후 20년)의 生殘餘命을 15년으로 추정하였으며, 早期老齡年金의 경우 55세부터 수급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算式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加入者의 平均餘命은 제도성숙에 따라 延長되리라 예상되므로 給與算式은 계속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

3) 減額老齡年金

現行法(1973年)에서는 加入期間 20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加入者를 위해 10년이상 20년

14) 停年年齡이 延長됨에 따라 절차 축소 내지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만 가입하고 60세에 도달시 基本年金額의 45%를 지급하고 10년이상의 가입기간에는 每 1년마다 5%씩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의 給與算式은 다음과 같다.

$$2.4 \cdot (A+B')(0.45+0.05 \cdot n')$$

여기서 B' : 最終3年間 平均月報酬

n' : 10年超過 加入年數

그런데 現行制度의 경우 10년 가입자에게도 年金受給權을 부여하고 있어 年金財政의 展望을 고려할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또한 給與水準이 너무 낮아 生計保障이 어렵게 되어 있다. 그리고 1973年制度는 最終報酬基準方式이므로 年金受給 直前 10년간 高報酬職場에 근무한 加入者에게는 形평에 어긋나는 높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10년간이란 자격기간을 15년간으로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급여수준도 어느 정도 生計保障 수준으로 근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基本年金額의 72.5%로부터 每 1년 초과시 5%씩을 가산하도록 다음과 같이 算式을 제안하였다(表 17 참조).

$$2.4(A+B)(0.725+0.05n'')+加給年金額$$

여기서 n'' : 15年超過 加入年數

B : 全加入期間 平均報酬月額

〈表 17〉 減額老齡年金(給與水準)

| 加入年數 | 給 與 水 準 |
|------|-------------------|
| 15년 | 全加入期間 平均報酬月額의 29% |
| 16년 | 全加入期間 平均報酬月額의 31% |
| 17년 | 全加入期間 平均報酬月額의 33% |
| 18년 | 全加入期間 平均報酬月額의 35% |
| 19년 | 全加入期間 平均報酬月額의 37% |

註 : $B=A$ 를 前提.

여기서 15년 가입하면 基本年金額의 算式에 비추어 75%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나 老齡年金의 기본은 完全老齡年金(20년이상 가입)이므로 이의 특례라 할 수 있는 減額年金은 75%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정함으로써 可能하면 完全年金을 수급할 수 있도록 誘因하려고 하였다.

4) 在職者老齡年金

現行法(1973年)에서는 年金加入期間이 20년 이상인 60세이상 者와 加入期間 10년이상 20년미만인 65세이상 者로서 報酬를 받고 業務에 종사하는 年金受給權者에게는 前者의 경우 基本年金額의 40%부터 100%까지, 後者の 경우 減額老齡年金額의 45%부터 70%까지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表 18 참조).

이 制度는 老齡勤勞者의 早期退職을 예방하고 年金受給權者의 受給利益保護란 점에서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老齡勤勞者의 早期退職을 예방하는 것이 옳으나 早期退職을 촉진하여 젊은 근로자들의 취

업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이 옳으나 하는 문제는 全體勞動市場의 就業構造 및 雇傭狀況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先進國의 경우, 高失業率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젊은 근로자의 就業을 촉진하기 위해 生産性이 떨어지는 老齡勤勞者의 早期退職을 권장하여 早期年金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年金受給者의 증가와 年金給與支出의 증가로 政府財政上 問題點을提起하고도 있다¹⁵⁾.

現行法(1973年)에서는 10년이상 20년미만 加入하고 65세 이상時에도 在職者老齡年金을 支給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65세이상 者의 在職은 극히 희소한 경우로서 制度的으로 고려할 만한 대상이 못되어 本研究에서는 減額老齡年金을 15년이상 加入하는 경우에 한하여 支給하도록 하였고 60세이후 재직시에는 加入期間을 연장할 수 있도록 選擇權을 부여하여 完全老齡年金 受給權을 취득하도록 하였다¹⁶⁾.

〈表 18〉 國民福祉年金制度의 在職者老齡年金 給與內容(1973年法)

| 20년이상, 60세이상 者 | | 10년이상 20년미만, 65세이상 者 | |
|----------------|-------------|----------------------|------------|
| 受給年齡(세) | 給與水準 | 受給年齡(세) | 給與水準 |
| 60(55) | 基本年金額의 40% | 65(60) | 基本年金額의 45% |
| 61(56) | 基本年金額의 50% | 66(61) | 基本年金額의 50% |
| 62(57) | 基本年金額의 60% | 67(62) | 基本年金額의 55% |
| 63(58) | 基本年金額의 70% | 68(63) | 基本年金額의 60% |
| 64(59) | 基本年金額의 80% | 69(64) | 基本年金額의 65% |
| 65(60) | 基本年金額의 100% | 70(65) | 基本年金額의 70% |

註: ()안은 女性 및 特殊職種者의 年齡임.

15)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Social Security in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FRBNY Quarterly Review*, Spring 1983.

16) 本案에서는 20년이상 가입, 60세에 달할 때에 재직자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15년이상 20년미만 가입자에게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감액연금 수급자격자가 60세이후 계속 가입하여 완전연금 수급자격을 취득할 경우의 급여혜택은 60세부터 수급하는 완전연금 수급자의 급여혜택보다 적을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을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施行細則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年金算定式과 給與水準은 다음과 같다(表 19 참조).

• 給與算式

$$\text{基本年金額} \times \{0.5 + 0.1(x - 60)\}$$

여기서 $x \geq 65$ 세이면 $x = 65$

<表 19> 在職者老齡年金(給與水準)

| 年 齡 | 給 與 水 準 |
|--------|-------------|
| 60(55) | 基本年金額의 50% |
| 61(56) | 基本年金額의 60% |
| 62(57) | 基本年金額의 70% |
| 63(58) | 基本年金額의 80% |
| 64(59) | 基本年金額의 90% |
| 65(60) | 基本年金額의 100% |

註: ()안은 坑內夫의 年齡임.

5) 特例老齡年金

1973年法에 의한 老齡年金의 特例規定은 制度施行當時 40세이상 55세미만者는 年金加入期間이 5년 내지 14년 3개월만 충족되면 特例老齡年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加入期間

은 加入時年齡에 따라 60개월(54세)부터 172개월(40세)만 加入하면 基本年金의 45%(54세)로부터 100%(40세)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는 40세이상者中 完全老齡年金 또는 減額老齡年金의 支給資格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도 給與水準이 우월한 特例年金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다. 이는 世代間 衡平의 觀點에서 볼 때 不合理하며 年金財政面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45세이상 60세미만者에게는 特例年金의 受給資格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給與水準은 衡平에 맞게 引下調整하였다(表 20 참조).

• 給與算式

$$\text{基本年金額} \times \{0.25 + 0.05(54 - m)\}$$

여기서 m 은 制度施行當時 年齡

<表 20> 特例老齡年金의 給與水準

| 年 齡 | 加入期間 | 給與方法 및 年金額水準 |
|--|---|--|
| 59(54)이상 60(55)미만 58(53)이상 60(55)미만 57(52)이상 60(55)미만 56(51)이상 60(55)미만 55(50)이상 60(55)미만 | 5년미만 | (選擇) • 返還一時金: 勞使負擔金 × 法定利子率 • 加入資格延長: 5년간(단, 特例年金基準 適用) |
| 54(49)이상 60(55)미만 53(48)이상 60(55)미만 52(47)이상 60(55)미만 51(46)이상 60(55)미만 50(45)이상 60(55)미만 49(44)이상 60(55)미만 48(43)이상 60(55)미만 47(42)이상 60(55)미만 46(41)이상 60(55)미만 45(40)이상 60(55)미만 | 5년이상 6년이상 7년이상 8년이상 9년이상 10년이상 11년이상 12년이상 13년이상 14년이상 | 基本年金額의 25% + 加給年金額 基本年金額의 30% + 加給年金額 基本年金額의 35% + 加給年金額 基本年金額의 40% + 加給年金額 基本年金額의 45% + 加給年金額 基本年金額의 50% + 加給年金額 基本年金額의 55% + 加給年金額 基本年金額의 60% + 加給年金額 基本年金額의 65% + 加給年金額 基本年金額의 70% + 加給年金額 |

註: ()안은 坑內夫 年齡임.

라. 障害年金

障害年金은 疾病이나 負傷으로 不具・廢疾이 발생하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被保險者의 生計를 경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으로 勤勞能力의 정도 즉, 障碍程度와 그들의 所得水準 및 加入期間

등을 고려하여 年金額을 지급한다¹⁷⁾. 現行法(1973年)은 1年이상 가입자가 疾病이나 負傷으로 障碍를 입었을 때 初診日로부터 2年이 경과한 때(단, 이 期間 안에 障碍程度가 確定하는 確定日)의 障碍程度에 따라 基本年金額의 100%, 50%, 3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表 21 참조).

〈表 21〉 障害年金의 給與水準 比較

| 等級 | 國民福祉年金(1973年) | 國民年金(案) | 日本厚生年金 |
|---------|------------------|---------------------------|---------------------------|
| 1 級 | 基本年金額+加給年金額 | 左 同 | 基本年金額의 125%+加給年金 |
| 2 級 | 基本年金額의 50%+加給年金額 | 基本年金額의 80%+加給年金 | 基本年金額+加給年金 |
| 3 級 | 基本年金額의 30%+加給年金額 | 基本年金額의 60%+加給年金 | 基本年金額의 75%+加給年金 |
| 障 害 補償金 | | 基本年金額의 150% (단, 一時金支給) | 基本年金額의 150% (단, 一時金支給) |

〈表 22〉 國民年金과 產災保險制度의 給與水準 比較

| | 國民年金制度 | 產災保險制度 |
|------|---|---|
| 保險料率 | 2.5%~10%(本人 1~4%, 使用者 1.5~6%) | 1.49%(使用者) |
| 障害年金 | | |
| 1級 | 基本年金額+加給(40%) | 平均賃金의 313日分(85.8%) |
| 2級 | 基本年金額× $\frac{80}{100}$ +加給(32%) | 平均賃金의 277日分(75.9%) |
| 3級 | 基本年金額× $\frac{60}{100}$ +加給(24%) | 平均賃金의 245日分(67.1%) |
| 4級 | 基本年金額× $\frac{150}{100}$ +加給(一時金) | 平均賃金의 213日分(58.4%) |
| 5級 | — | 平均賃金의 184日分(50.4%) |
| 6級 | — | 平均賃金의 156日分(42.7%) |
| 7級 | — | 平均賃金의 131日分(35.9%) |
| 遺族年金 | 基本年金額× $(\frac{40}{100} \sim \frac{60}{100})$ +加給(16~24%) | (平均賃金× $365 \times \frac{47}{100}$)+(平均賃金× $365 \times \frac{5}{100}$ ×受給資格遺族數)+葬儀費(47%이상) |

註:()안은 賃金代替率임.

17) K. Palotal, *Problems Arising from the Low Level of Invalidity Pensions*, XIXth General Assembly Report X, Geneva: ISSA, 1978 참조.

그런데 各國의 制度發展過程을 보면 制度初期에는 廢疾確定日까지의 期間이나 廢疾確定日 이전의 加入期間을 비교적 長期間 規制하였다가 制度가 성숙하면서 短縮調整하고 있다¹⁸⁾.

本研究에서는 現行法上 1년이상 가입자라는 용어는 제도운영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廢疾認定日 이전의 加入期間으로 하여 障害原因이 되는 疾病이나 負傷은 被保險期間內에 발생하는 때에만 受給資格을 부여할 수 있도록 明文化하였고 給與水準은 現行制度가 各國制度에 비하여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¹⁹⁾ 이를 引上調整하였으며 等級에 해당하지 않은 障害에 대해 障害補償金을 지급하도록 新設하였다(表 21 참조).

그런데 障害年金은 既存의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和 併給問題를 발생시킬 수 있다. 물론 兩制度는 管掌機構가 다르고 財源調達面에서도 國民年金은 勞使가 共同負擔하고 産災保險은 使用者單獨負擔이며, 그 性格面에서 産災保險은 業務上災害를 대상으로 하고 國民年金은 障害發生時 所得喪失에 대한 基本生活保障이기 때문에 兩制度는 併給하여도 무리는 없

다.

그러나 兩制度는 社會保障制度로서 같은 事故에 대하여 重複給與하게 되어, 社會保障의 基本精神에 위배되기 때문에 併給을 허용하되 給與水準을 調整하도록 하였다. 현행 産災保險은 國民年金制度보다 給與水準이 높기 때문에(表 22 참조) 業務上 障害의 경우에는 産災年金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國民年金制度의 本人負擔分은 一時金を 지급하고 만일 産災一時金を 선택하는 경우에는 國民年金에서는 障害年金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業務外 障害의 경우는 國民年金만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다.

한편 醫療保險制度和의 關係에 있어서는 醫療保險의 療養給與期間(年間 180日)과 年金制度의 障害確定期間(2年)간의 期間差異에서 발생하는 疾病管理나 生計對策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制度가 성숙하여 年金受給者들이 증가하게 되면 이들은 基本生計費 정도만을 지급받게 되므로 醫療費負擔의 脆弱階層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한 高齡者나 不具廢疾者가 대부분이므로 다른 階層보다도 醫療需要가 높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兩制度間的 療養期間 및 給與水準은 앞으로 相互補完的으로 調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遺族年金

이 制度는 加入者²⁰⁾ 또는 年金受給權者의 死亡時 그에 의하여 扶養하고 있던 家族의 生活를 保護하는 데 目的이 있다. 遺族年金의 範圍, 給與水準, 給與種類 등은 各國의 家族制度나 傳統文化的 背景에 따라 내용을 달리한다(表 23 참조). 1973年 法에서의 遺族範圍는 60세이상 혹은 障碍等級 2級이상의 夫·父母

18) 日本厚生年金制度는 廢疾日까지의 期間을 制度初期(1941년)에는 3년으로 하였다가 1976년에 1년 6개월로 短縮하였으며 廢疾認定日 이전의 加入期間은 5년에서 6개월로 短縮하였다.

19) 현행제도가 기본연금액에 대한 급여율에 있어서는 낮으나, 기본연금액 산정에 있어서 각종계획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제도안보다 더 높을 것이다. 장해연금의 성격으로 보아 본제도 안에서도 기본연금액 산정은 기본각률료율(10%)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 加入期間 중 死亡時는 나라에 따라서 法定으로 6개월 내지 5년간의 加入期間을 要件으로 要求하고 있으며 加入期間中 발생한 疾病 또는 負傷으로 2년 내지 3년내에 死亡時 受給權을 認定함. 現行法上에서는 1년이상 加入을 요구하며, 加入中에 발생한 질병으로 初診日로부터 2년경과전에 死亡한 때에는 수급권을 인정함.

祖父母, 18세미만 혹은 2級이상의 障礙等級에 해당하는 子女와 孫子女가 대상이 되며 年金給與는 配偶者, 子女, 父母, 孫子女, 祖父母의 順으로 支給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給與水準은 年金加入期間 10년미만인 때에는 基本年金額의 40%, 10년이상 20년미만은 45%, 20년 이상은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給與水準은 우리나라의 各種 社會保障制度에 비하여 그 水準이 낮고 基本生計費를 充足할 수 없을 것으로 評價되어 年金額水準을 引上 調整하였다. 즉, 10년미만은 40%, 10년이상 20년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로 각각 인상하였다. 이와 아울러 法定下限을 설정하여 이들의 最少限의 生計費를 確保하도록 하였다. 한편 遺族年金은 障害年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產災保險制度와의 二重給與問題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併給을 原則으로 하되 한 制度에서 年金을 선택하면 다른 制度에서 一時金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바. 返還一時金

社會保險 性格의 國民年金制度에서는 원칙적으로 返還一時金制度가 없거나 一時金支給을 최대한 抑制하여 어느 形態든가 年金을 支給받을 수 있도록 誘導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現狀況에서는 女性勤勞者의 離職率이 높고 低賃金勤勞者의 移動率이 빈번하여 加入對象者의 失業保險的 給與가 필요하다. 그러나 適用對象者가 全國民으로 擴大되면 返還一時金制度의 機能은 自然히 폐지되거나 他機能(失業保險 등)에 의해 代替될 것이 期待된다.

現行法(1973年)에서는 加入者가 年金을 受給할 수 있는 法定要件에 미달할 경우 즉, 年金加入期間이 10년미만인 者로서 60세에 달할 때, 그리고 1년미만 加入者가 死亡한 때 支給하되 女子에 대해서는 年金加入期間에 관계없이 制度脫退後 1년이 경과하면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本研究에서는 現行的 勞動市

〈表 23〉 各國의 遺族年金額水準 比較

| | 配偶者年金 | 1人當 孤兒年金 | 完全 ¹⁾ 孤兒年金 | 遺族年金 上 | 遺族年金 下 | 葬祭費 ²⁾ | 遺族範圍 |
|-------|-------|-------------|--------------------------|-----------|-----------|-------------------|--|
| 오스트리아 | 0.6P | 0.24P | 0.36P | 1.1P | 0.3E | M | W.C. |
| 이집트 | 老齡年金과 | 同一 | — | 0.8E | 17.9弗 | F | W.C.P _a .B |
| 프랑스 | 0.5P | D | — | — | 121.1弗 | F | W |
| 西獨 | 0.6P | 0.1P+D | 0.2P+α | P | — | M | W.C. |
| 이탈리아 | 0.6P | 0.2P | 0.4P | P | 146.8弗 | M | W.C.P _a |
| 日本 | 0.5P | D | 203弗이상 | — | 168.3弗 | F | W.C.P _a G.G _c |
| 포르투갈 | 0.6P | 0.1~0.2P | 0.2~0.4P | P | 28.9弗 | F | W.C. |
| 스웨덴 | 0.4P | 0.1~0.15P | 0.4P | — | 0.4P | — | W.C. |
| 스위스 | 0.8P | 0.4P | 0.6P | E | 242弗 | — | W.C. |
| 美國 | P | — | 0.75P | 513.8弗 | 182.7弗 | — | W.C.P _a |

註: P: 老齡 및 障害年金額, E: 平均所得, D: 加給年金, d: 扶養者數, α: 追加給與, W: 配偶者, C: 子女, P_a: 父母
B: 兄弟, G: 祖父母, G_c: 孫子女

1) 兩親이 없는 孤兒에 支給되는 年金임.

2) M은 醫療保險에서 支給되며, F는 年金保險에서 支給.

資料: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p. cit.*, 1984.

場 現實을 감안하여 返還一時金制度를 制度定着 때까지의 經過的 制度로 간주하여 존속시키되 15년미만 加入者에 대해서는 60세까지 待期하지 않아도 男女 구분없이 一時金으로 返還할 수 있도록 하였고, 現行制度의 加入期間과 待期期間에 따른 복잡한 利率適用을 單純化시켜 다음과 같이 返還一時金算式을 構成하였다.

• 給與算式

$$\sum_{t=1}^T WG(t) \cdot RC(t) \cdot (1 + RI(t))^{T-t}$$

여기서, T : 受給時點, t : 加入時點

WG : t 期の 名目報酬月額

$RC(t)$: t 期の 釀出料率

$RI(t)$: T 期の 財形貯蓄利率

여기서 加入者의 名目賃金上昇率은 財形貯蓄利率水準을 上廻하지 않는 한 返還一時金이 現行退職金보다 有利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 制度는 積立基金의 利殖率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年金財政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制度初期에는 年金給與支出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財政的 影響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制度의 성숙에 따라 크게 影響을 미칠 수 있으므로 財形貯蓄金利는 앞으로 基金收益率로 代替되어야 할 것이며 根源的으로는 返還一時金制度가 점차 消滅하고 동시에 退職金制度는 企業의 自律的인 企業一時金 또는 年金制度로 轉換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 日本 厚生統計協會, 『保險と年金の動向』, 第28卷 13號, 1981, pp. 301~306 참조.

22) 즉, 制度施行 初期에는 年金受給者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制度의 歷史가 경과함에 따라 受給者數가 人口構造의 老齡化와 더불어 증대하게 되는데 財政支

Ⅳ. 年金財政計劃 및 展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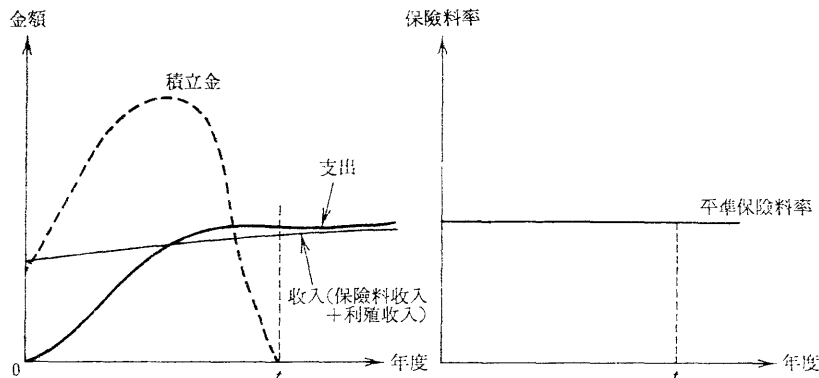
1. 年金財政運用方式

일반적으로 財政運用方式은 크게 積立方式과 賦課方式으로 나눌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두 가지 방식을 修正한 修正積立方式과 修正賦課方式으로 구분할 수 있다. 年金財政運用은 年金制度에 關係된 여러 가지 變數와 年金制度의 成熟度에 따라 修正되면서 適用된다²¹⁾. 本研究에서는 原則적으로 積立方式에 입각하여 制度初期의 負擔能力을 고려하여 修正積立方式을 加味하였다.

積立方式이란 장래에 支給하게 될 年金給與를 制度에 加入하고 있는 동안 保險料 등에 의해 積立하도록 計劃하는 財政方式이다. [圖 1]에서와 같이 장래에 증대하는 支出에 대비하여 장래에 큰 수준으로 변화하지 않는 保險料率을 정하여 財政을 運用하는 計劃이며, 이 경우 制度施行 初期에는 支出보다 保險料收入이 크기 때문에 積立金이 累增되고 이와 동시에 積立金 利殖收入도 늘어나 收入이 支出을 지속적으로 上廻하게 된다. 그러나 制度가 점차 成熟되어 감에 따라 支出이 증대하고 결국에는 支出이 收入을 초과하는 時點에 이르면 積立金으로서 超過支出을 보충하게 된다. 또한 制度가 완전히 成熟한 段階(즉 t 時點)에서는 保險料率이 增加하지 않는 경우 積立金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積立方式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²²⁾.

이러한 積立方式의 長點으로는 첫째, 世代

〔圖 1〕 積立財政運用方式



간의 公平한 保險料負擔이 가능하고 둘째, 累積基金에 의한 資本形成으로 資本不足國의 경우 이를 活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短點으로서의 첫째, 制度施行初期의 過重한 保險料負擔能力이 問題되며 둘째, 장래에 변화하는 支出을 豫測하기 困難한 制度施行 初期에 適正平準保險料率을 算定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財政收支에 影響을 미치는 變數, 예를 들어 經濟的 變數 및 人口統計的 變數, 기타 여러 가지 變數가 상황에 따라 變化하면 積立方式의 初期에 설정하였던 財政計

劃, 즉 平準保險料率의 修正이 불가피하게 되어 원래의 高유한 의미의 積立方式을 維持하기가 어렵게 된다²³⁾.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適正하다고 예상되는 釀出料率을 設法 推定하더라도 현재의 經濟的 負擔能力이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현재의 經濟的 負擔能力을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適正釀出料率 水準으로 引上調整하는 財政計劃을 세우도록 하였고 여기에서 世代間 負擔의 公平性을 기하기 위하여 釀出과 給與水準이 連繫될 수 있도록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였다. 즉, 基準釀出料率 水準을 정하고 그 水準에 미달되는 釀出期間에 대해서는 그만큼 年金算定額을 評價切下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制度的 成熟에 따라 年金受給者의 比重이 커질수록 基準釀出料率은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將來에 있어서는 현재의 年金歷史가 오래된 先進諸國과 같이 賦課方式으로 이행하여야 될 것이다.

출은 이러한 人口統計的 要因과 같은 自然的인 要因과 함께 物價上昇 및 賃金上昇 그리고 不況, 失業과 같은 經濟的 要因에 따라 變化하므로 豫測하기가 곤란하여 平準保險料率을 精確하게 算出하기가 어렵고, 또한 制度施行 初期부터 과도하게 높은 保險料率을 負擔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問題點으로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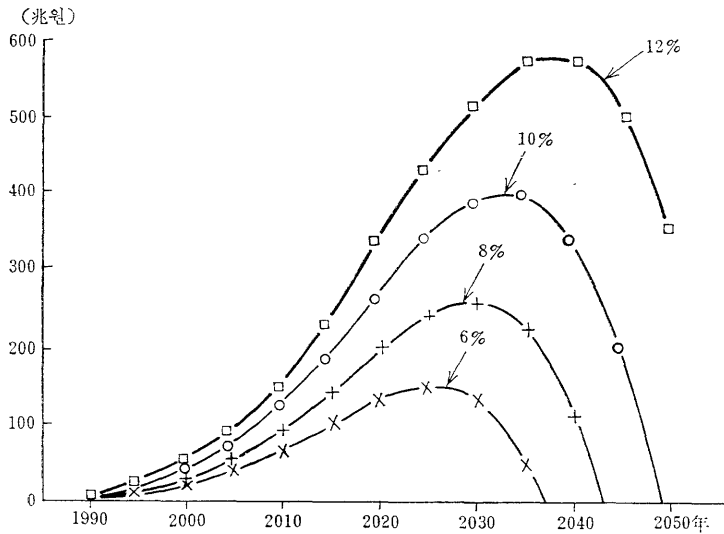
23) Paul Fisher, *Social Security in Korea in the Eighties*, Consultant Paper Series No.14,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pril-May 1980, pp. 41~43.

24) 賦課方式이란 일정한 짧은 期間(예컨대 1년간)중에 지출해야 하는 給與費를 그 期間內의 保險料收入에 의해 충당하도록 計劃하는 方式으로서, 이 方式은 收入源으로서 利殖收入을 고려하지 않아 積立金을 전혀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어도 支出準備金的인 役割만을 하게 된다. 또한 이 方式에서는 給與支出의 變化가 직접 保險料의 변화로 나타나므로 制度成熟度의 各 段階마다 保險料率上 차이가 발생한다.

2. 財源調達計劃

各國 年金制度의 財源은 勞·使의 兩者負擔 혹은 勞·使 이외에도 政府가 財政을 支援하

[圖 2] 釀出料率水準別 積立基金의 推移



는 3者負擔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釀出料中 被保險者寄與金은 加入者의 賃金 혹은 所得에 法定의 料率로 賦課되고, 使用者負擔金은 被保險者의 寄與金과 같거나 그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政府는 통상 行政管理費나 給與缺損費를 補助하고 있다. 이와 같

은 釀出料率은 國家間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年金制度의 成熟期間, 制度運營形態, 經濟狀態 및 年金財政展望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²⁵⁾.

年金財政運用方式에서 論한 바와 같이 積立方式을 原則으로 할 때, 基準釀出料率의 適正

<表 24> 釀出金 總額과 受給總額의 現價를 同一하게 하는 釀出料率

(단위 : %)

| 加入期間 所得分位 | 40% 模型 ¹⁾ | | | 30% 模型 ²⁾ | | |
|--------------|----------------------|------|------|----------------------|------|------|
| | 20년 | 30년 | 40년 | 20년 | 30년 | 40년 |
| I | 37.0 | 39.2 | 39.4 | 27.8 | 29.4 | 29.6 |
| II | 29.9 | 31.9 | 32.1 | 22.4 | 23.9 | 24.1 |
| III | 22.1 | 23.9 | 24.3 | 16.6 | 17.9 | 18.2 |
| IV | 16.6 | 18.3 | 18.7 | 12.5 | 13.7 | 14.0 |

註 : 1) 40% 模型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年金給與算式, $PP=2.4 \times (A+B)(1+0.05m)$ 은 年間年金給與額을 나타내는 것이다. A는 均等部分, B는 比例部分, m은 20年超過 加入年數를 나타낸다. 따라서 위의 式을 月額으로 표시하면 $0.2 \times (A+B)(1+0.05m)$ 이 되며, $A=B$ 가 성립되는 勤勞者의 경우는 年金給與額이 平均報酬額(B)의 40%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2) 註 1)의 論議에서 2.4 대신 1.8을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25)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83*, Research Report No. 59, Washington, D.C., 1984 참조.

水準을 결정하기 위해서 年金財政의 安定性, 加入者의 損益均衡點에서의 釀出料率, 家計 및 企業의 負擔能力 등을 감안하면서 適正한 釀出計劃을 구성하였다. 그 結果 첫째, 年金財政의 安定性은 上述한 給與內容과 일정한 假定을 바탕으로 釀出料率水準別로 財政推計²⁶⁾한 結果 勤勞者平均月賃金の 약 10% 水準이면 相當期間(制度實施부터 약 50年)동안 財政收支의 安定性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評價되었다²⁷⁾(圖 2 참조).

둘째, 標準加入者의 損益均衡點 즉, 標準加入者가 年金受給者로서 받는 總給與額과 均衡을 이루기 위해 加入者 本人이 加入期間 동안 釀出해야 하는 料率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分析結果²⁸⁾는 <表 24>와 같다.

分析結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模型에 의하면 所得分位와 加入期間에 따라 약 17~40%로 分布하고 있다. 여

기서 Ⅲ分位가 平均이므로 전체적인 均衡은 약 24%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損益均衡點도 分析의 바탕이 되는 假定의 變化 즉, 人口構造의 老齡化(平均餘命의 延長), 賃金上昇率, 基金利殖率, 年金引上率 등의 變化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위의 分析結果는 어느 정도 制度가 成熟되고 加入者가 탈락하지 않으며, 年金受給者의 死亡後에도 遺族年金으로 承繼되는 경우를 분석한 것이므로 制度初期의 適正釀出料率 決定에는 參考의 意味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制度의 成熟時에는 有效한 分析이 될 수 있다고 期待된다.

세째, 負擔能力面에서 볼 때 制度實施 初期段階에는 家計 및 企業의 負擔能力이 釀出料率 決定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負擔은 企業利潤과 家計의 消費 및 貯蓄과 관련하여 미래의 年金給與를 위해 어느 한 쪽을 줄여야 하므로 費用轉嫁 問題와 더불어

<表 25> 各國의 社會保障費用 負擔現況(1983)

(단위 : %)

| | 韓 國 | | 日 本 | | 西 獨 | | 美 國 | |
|---------------|-------|-------|-------|-------|------|------|------|------|
| | 勞 | 使 | 勞 | 使 | 勞 | 使 | 勞 | 使 |
| 公 的 年 金 | — | — | 5.3 | 5.3 | 9.0 | 9.0 | 5.4 | 5.4 |
| 醫 療 保 險 | 1.5 | 1.5 | 4.24 | 4.25 | 5.5 | 6.7 | 1.3 | 1.3 |
| 產 災 保 險 | — | 1.24 | — | 6.7 | — | 1.5 | — | 1.3 |
| 雇 傭 (失 業) 保 險 | — | — | 0.55 | 0.9 | 2.3 | 2.3 | — | 2.7 |
| 法 定 退 職 金 | — | 8.3 | — | — | — | — | — | — |
| 計 | 1.5 | 11.04 | 10.1 | 17.15 | 16.8 | 19.5 | 6.7 | 10.7 |
| | 12.54 | | 27.25 | | 36.3 | | 17.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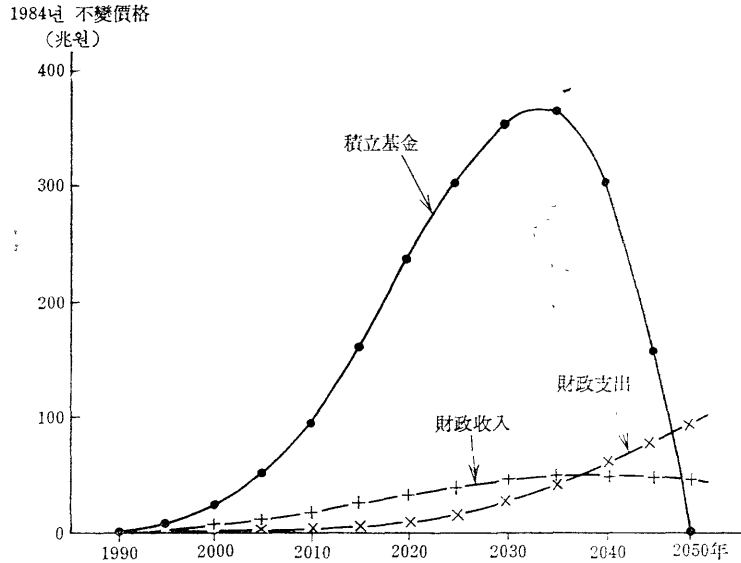
資料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83*, Research Report No. 59, Washington, D.C., 1984.

26) 財政推計方法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閔載成 外, 『國民年金制度의 基本構想과 經濟社會 波及效果』, 第 5 章 및 附錄② 韓國開發研究院, 1986. 9 참조.

27) 巨視經濟變數의 變化에 따른 財政推計結果의 變移는 閔載成·崔秉浩, 『國民福祉年金의 財政收支推計 및 財政分析』, 韓國開發研究院, 1985. 7, pp. 62~75 참조.

28) 分析方法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閔載成 外, 前揭書, pp. 242~254 참조.

〔圖 3〕 積立基金 및 財政收支推移(基本案)



註: 收支曲線の交叉點에서 積立基金이 頂點을 이루지 않는 현상은 經常價格을 不變價格으로 轉換하는 過程에서 발생한 것임.

經濟的 分析이 매우 복잡하게 된다. 아울러 負擔問題는 經濟的 分析을 떠나 政治的인 利害關係에도 關聯되어 있기 때문에 뚜렷한 結論을 내리기가 무척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社會保障費 負擔現況을 先進國과 比較하는 것으로 하였다(表 25 참조). 先進各國의 社會保障費用 負擔面에서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5%미만으로 낮은 水準이며 法定退職金負擔을 합하여도 12.5% 水準이다. 더우기 退職金을 賃金後拂의 性格으로 보면 불과 4.2%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先進國의 경우 企業年金에 의한 使用者負擔分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負擔水準은 결과적으로 매우 낮다.

이상 여러 가지 要因을 고려하여 本研究에서는 國民年金制度의 釀出計劃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즉, 使用者 및 被傭者의 釀出金을 年金財源의 根幹으로 하고, 政府는 行政管理費를 補助하도록 한다. 그리고 基準釀出料率은 年金財政의 安定性을 고려하여 10% 수

준으로 하되 制度施行 初期의 負擔能力을 고려하여 2.5%부터 시작하여 2000년에 10% 수준까지 引上하도록 한다. 여기서 勞使間의 分擔比率는 使用者 60 對 被傭者 40의 比率로 하였고 現行 退職金의 年金化와 關聯하여 두 가지 代案을 제시하였다(表 26 참조). 第 I 案은 使用者負擔의 輕減을 위해, 그리고 退職金制度의 年金制度로의 漸進的 轉換을 위해 退職金의 法定負擔率(8.3%) 중에서 일부를 점차

〈表 26〉 釀出計劃

| | (단위: %) | | | |
|----------|-------------|-------------|-------------|--------------|
| | 1988 ~91 | 1992 ~95 | 1996 ~99 | 2000년 이 후 |
| 全體 | 2.5 | 5.0 | 7.5 | 10.0 |
| 加入者 負擔 | 1.0 | 2.0 | 3.0 | 4.0 |
| 使用者 負擔 | 1.5 | 3.0 | 4.5 | 6.0 |
| 〈第 I 案〉 | | | | |
| 退職金(使用者) | 1.5 | 3.0 | 4.5 | 6.0 |
| 〈第 II 案〉 | | | | |
| 新規(使用者) | 1.5 | 1.5 | 1.5 | 1.5 |
| 退職金 | — | 1.5 | 3.0 | 4.5 |

年金의 釀出財源으로 代替하였다. 第Ⅱ案은 退職金の 賃金後拂의 性格을 강조하는 勤勞者 側의 입장을 반영하여 制度初期에는 退職金を 존속시키고 使用者의 新規追加負擔으로 財源을 釀出하며 勞動市場이 어느 정도 成熟(失業 保險 및 就業網의 확충)되리라 기대되는 1990 年代에 가서 使用者의 追加負擔과 退職金에서 의 代替財源을 共存시키면서 점차적으로 退職 金の 年金化를 誘導하도록 하였다²⁹⁾.

3. 年金財政 推計

앞에서 제시한 年金給與內容 및 釀出計劃과 本研究에서 推計한 巨視經濟變數들에 대한 假定을 바탕으로 推計한 結果(圖 3 및 表 27 참조)에 의하면 向後 약 50여년간은 年金財政

이 收支赤字없이 安定的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收支推移를 살펴보면 2010년까지는 年金受給者數가 적어 支出額增加幅이 완만하 나 그 이후 本格的으로 受給者가 발생하기 시 작하여 財政支出의 增加速度가 점점 加速化되 어 2028년에 財政支出이 釀出料收入을 上廻하 게 되고, 2038년에 當年度收支差가 赤字(財 政支出)財政收入(釀出料+利殖收入))를 示顯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積立基金은 制度實 施 이후 계속되는 收支差(財政收入)財政支出) 의 累積에 의해 2000년에 약 24兆원(1984년불 變가격), 2010년에 약 100兆원, 2020년에 약 240兆원, 그리고 2033년에 약 370兆원으로 頂 點에 달하나, 그 이후에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9년에 赤字를 示顯할 것으로 展望된다. 따 라서 制度가 완전히 赤字를 보이는 2049년 이

〈表 27〉 財政收支 推計結果(基本案)

(단위 : 1984년 不變價格, 兆원, 萬명)

| | 1988 | 1989 | 1990 | 1995 | 2000 | 2010 | 2020 | 2030 | 2040 | 2050 |
|-------------------------|-------|-------|-------|-------|-------|---------|---------|---------|--------|--------|
| 財政收入 | 0.42 | 0.52 | 0.62 | 2.28 | 7.13 | 18.71 | 35.20 | 48.39 | 55.65 | 46.32 |
| 釀出料 | 0.42 | 0.47 | 0.52 | 1.70 | 5.28 | 11.58 | 17.68 | 24.87 | 34.63 | 46.32 |
| 利殖收入 | 0.00 | 0.06 | 0.10 | 0.58 | 1.85 | 7.13 | 17.52 | 23.52 | 21.03 | 0.00 |
| 財政支出 | 0.00 | 0.03 | 0.06 | 0.49 | 1.46 | 4.81 | 11.22 | 28.90 | 63.07 | 100.71 |
| 當年度收支差 ¹⁾ | 0.42 | 0.50 | 0.56 | 1.78 | 5.66 | 13.91 | 23.98 | 19.49 | -7.42 | -54.39 |
| 積立基金 ²⁾ | 0.42 | 0.90 | 1.42 | 7.66 | 24.32 | 99.73 | 239.82 | 357.42 | 306.92 | -78.85 |
| 年金加入者 ³⁾ (A) | 446.3 | 471.2 | 496.6 | 662.8 | 751.6 | 1,041.8 | 1,052.4 | 1,004.5 | 951.6 | 865.4 |
| 老齡年金受給者(B) | 0.0 | 0.0 | 0.0 | 2.1 | 9.9 | 30.9 | 45.1 | 125.5 | 223.1 | 258.0 |
| B/A(%) | 0.0 | 0.0 | 0.0 | 0.3 | 1.3 | 3.0 | 4.3 | 12.5 | 23.4 | 29.8 |
| 賦課率 ⁴⁾ (%) | 0.00 | 0.15 | 0.28 | 1.46 | 2.77 | 4.15 | 6.35 | 11.62 | 18.21 | 21.74 |

註 : 1) 當年度 收支差가 (-)가 되는 時點은 2038년.

2) 積立基金이 (-)가 되는 時點은 2049년.

3) 年金加入者는 常備勤勞者規模 10인이상 事業場勤勞者.

4) 賦課率=當年度 財政支出/當年度 全加入者賃金總額.

釀出料率 : 1988~91년 2.5%, 1992~95년 5%, 1996~99년 7.5%, 2000년 이후 10%.

賃金上昇率 : 1985년 9%, 1986~2000년 8.5%, 2001~2020년 8%, 2021년 이후 7.5%.

利率率 : 1988~2000년 9%, 2001~2020년 8%, 2021년 이후 7%.

GNP「디플레이터」: 1985년 3.2%, 1986년 3.7%, 1987~2000년 4%, 2001~2020년 3.7%, 2021년 이후 3.5%.

29) 退職一時金の 年金化移行方法에 대해서는 五島淺男, 『企業年金의 導入と運用』, 東京中央經濟社, 1984, pp. 27~34 참조.

전에 釀出料率의 引上 혹은 年金給與의 引下 등과 같은 政策的 代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赤字發生의 信號는 이미 2038년(當年度收支差赤字), 2028년(財政支出)釀出料收入)에 나타나게 되므로 制度의 施行中 定期的인 財政推計를 통하여 國民經濟에 큰 충격을 주지 않도록 예방적인 政策的 代案이 事前에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財政收入의 構成을 보면 利殖收入의 比重이 점차 增加하여 2020~2030年間에는 總收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制度運營時 積立基金運用(基金의 收益性과 安定性)이 財政安定의 成敗를 좌우하는 중요한 要素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賦課率이란 當年度 財政支出이 當年度 全體加入者의 報酬總額에서 차지하는 比率로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賦課方式에 의한 料率과는 차이³⁰⁾가 있지만 이와 類似한 개념으로서 財政危機의 事態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各時點에서 현재의 釀出計劃과 앞으로의 예상되는 賦課率을 비교함으로써 장래의 釀出計劃 및 給與計劃을 立案할 수 있는 指標의 구실을 하게 된다. 즉, 制度가 완전히 赤字가 되는 2049년경의 賦課率은 21.54%로서 當時의 釀出料率이 10%이므로 11.54%를 追加負擔해야 制度를 維持할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負擔의 上昇은 불가하므로 이러한 狀況에 도달하기 전에 定期的인 財政推計를 통하여 當時의 經濟的 負擔能力과 與件을 감안하여 釀出計劃 및 給與計劃을 적절히 調整해 나가야 할 것이다³¹⁾.

30) 現행의 返還一時金支出은 積立方式에 의한 加入者 자신의 積立金을 찾아가는 것이며, 賦課方式에 의한다면 返還一時金制度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부과방식에 의하면 제도초기부터 老齡年金支出이 발생하므로 여기서의 賦課率과는 차이가 있다.

31) 修正積立方式에 의한 段階別 釀出料率 引上時의 財政推移는 閔載成·崔秉浩, 前掲書, pp.75~79 참조.

V. 結 言

國民年金制度의 導入은 우리 社會의 成長과 發展을 위한 安定基盤 強化에 기여하고 經濟發展의 中극적 目標인 福祉社會 建設을 실현시키는 基礎를 형성하는 데 必要한 制度라고 생각한다.

本制度案은 우리나라의 將來人口構造變化(老齡化), 現行老後生計保障對策, 現在의 社會經濟的 與件 등을 감안할 때 國民年金制度가 조속히 實施되어야 할 妥當성이 인정된다. 또한 本研究案의 基本的인 視角과 特徵은 첫째 先進國 年金制度의 歷史에서 나타나고 있는 問題點³²⁾중의 하나인 給與水準의 계속적인 引上을 감안하여 基本生計維持에 필요한 給與水準을 제시한 것이고, 둘째 長期的인 年金財政安定을 유지할 수 있도록 年金模型을 구성한 것이다. 이는 첫번째에 제시한 給與水準과도 관련이 있으며 年金給與와 釀出의 連繫를 給與算式 속에 內在化시켜 受益者負擔原則을 導入함으로써 責任感이 따르지 않는 지나친 福祉受惠를 抑制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年金給與의 基礎가 되는 加入者報酬의 算定에 있어서도 最終報酬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加入者 全勤勞期間을 통한 貢獻에 대한 報償的 性格을 갖도록 하였다. 이는 最終加入期間中の 급격한 報酬引上 혹은 引下에 의한 年金額의 公平性沮害를 방지하고 全國家經濟로 보아서도 生産性原則에 입각하여 지나친 給與支出의 抑制에도 寄與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세계 政府財政을 行政管理費만 負擔토록 制限함으로

써 財政의 中立性을 어느 정도 견지하도록 하였고 또한 國民經濟의 負擔水準을 國民經濟에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釀出計劃을 2000년까지 점진적으로 引上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勞使兩者負擔을 原則으로 하되 負擔比率을 4:6으로 하였으며, 企業의 負擔加重을 해소하기 위해 現행의 法定退職金財源中 일부를 代替할 수 있는 방안을 代案으로 제시하였다. 卮欸, 年金給與構造內에서 所得再分配機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現行法(1973년)보다 所得再分配效果를 더욱 강조하여 社會保險으로서 給與水準의 普遍性을 지향하도록 함으로써 앞서의 生産性 및 受益者負擔原則과 調和를 이루도록 하였다.

本制度의 運營上 앞으로 惹起될 수 있는 문제점과 政策課題는 첫째, 退職金制度의 年金化와 관련하여 退職金財源은 年金과는 달리 積立方式이 아니고 企業內의 社內留保로 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또한 退職金支給方式도 最終月報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企業會計上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며, 退職金中 年金財源으로 代替되지 않고 남은 부분의 既得權保障方法에 대한 合理的인 計算法이 勞使間에 合意를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退職金の 殘餘部分이 企業年金化되는 경우 國民年金과의 衡平問題와 先進國과 같이 國民年金的 報酬比例部分에 대한 企業自律化(contracting-out system)에 대해서도 研究檢討되어야 할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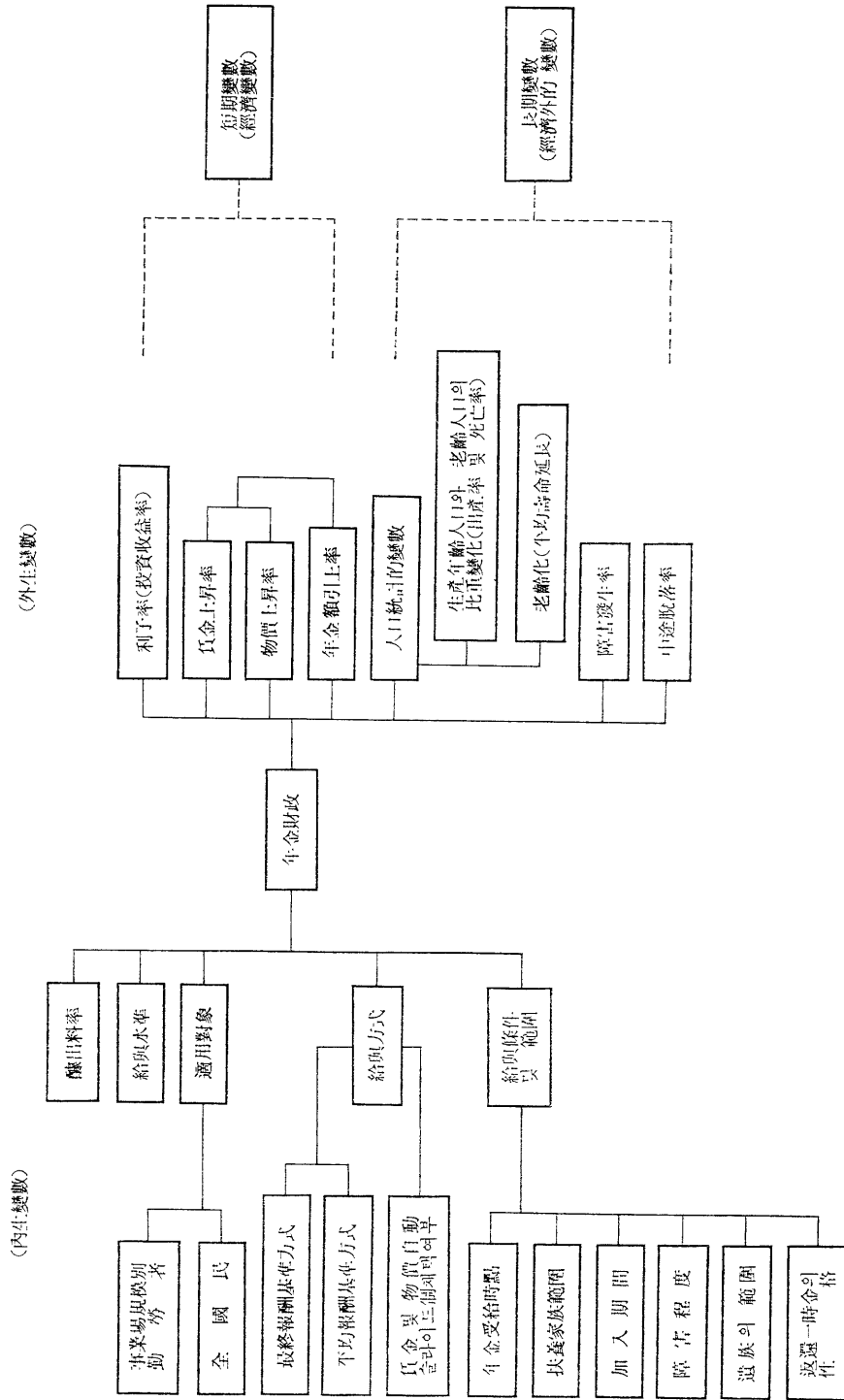
32) 現제 先進國에서 맞이하고 있는 年金財政의 問題點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早期退職年金制度의 도입 ② 인플레이에 대한 年金額 調整의 關連한 표준도입 ③ 인플레이보다 낮은 利子率 ④ 期待壽命의 延長 ⑤ 鈍화된 經濟成長 및 失業 ⑥ 給與의 擴張 趨, 적용범위확장, Minimum Pension 도입, 인플레이조정, 수급자 1인당 실질급여액 상승(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FRBNY Quarterly Review*, Spring 1983, pp. 19~21 참조).

다. 둘째 既存의 公的年金制度(公務員·軍人·私立學校敎職員年金)의 加人者가 國民年金制度로 移轉될 경우 또는 그 反對의 경우 兩制度間에는 釀出 및 給與構造가 다르므로 合理的인 調整方法이 摸索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產災保險法上的 障害 및 遺族補償給與와 國民年金的 障害 및 遺族年金과의 調整問題가 대두될 수 있고 이와 아울러 現行 醫療保險制度의 療養期間과 관련하여 三者間의 關係가 공백이 없이 合理的으로 連繫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卮欸, 年金財政의 長期的 安定을 위해서는 財政上 問題를 야기시킬 위험이 있는 變數에 대한 分析과 함께 長期的으로 財政을 健全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年金財政에 影響을 미치는 諸變數를 정리하면 [圖 4]와 같다. 이들 諸變數들이 年金財政에 正의 效果를 미치기도 하고 負의 效果를 미치기도 하는데, 本研究의 結果 財政安定的 側面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도출할 수 있다.

1) 釀出料率, 利殖率이 높을수록, 그리고 給與水準이 낮을수록 財政의 健全性은 提高된다. 制度初期(本制度에서는 2000년까지)에 釀出 및 給與計劃은 이미 확정되므로 調整可能한 것은 利殖率인데, 利殖率은 國民經濟에 크게 影響을 받지만 基金運用의 妙에 따라서 收益性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基金의 收益性 및 安全性的 保障이 制度의 死活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要因임을 認識하여야 한다.

2) 賃金上昇率은 높을수록 年金財政收入을 증가시키는 한편 年金額引上率에 影響을 미쳐 年金財政支出을 증가시켜 收支兩面에 影響을

〔圖 4〕 年金財政을 決定하는 諸般變數



미친다. 이 중 어느 것이 큰가에 따라 年金財政의 健全성에 미치는 효과가 결정될 것이다. 本研究에서는 釀出 및 給與構造上 財政支出에 미치는 효과가 커서 年金財政健全성에 負의 효과를 미친다. 그러나 年金額引上率이 物價上昇率에 連動的이라면 賃金上昇率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年金財政에 미치는 효과도 달라질 것이다.

3) 年金額의 物價 및 賃金自動 「슬라이드」 制를 약하게 혹은 時差를 두고 적용하면 短期的으로 財政의 健全성은 提高될 것이다.

4) 平均壽命의 延長 등 老齡化가 빨리 進行될수록 財政健全성에 負의 효과를 미친다. 그리고 生産年齡人口 對 老齡人口의 比重의 상대적인 크기는 財政健全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높은 出生率은 20~30년후 生産人口로 成長하기 때문에 財政收入增加要因이 되지만 60~65년후 결국 老齡人口로 成長하므로 支出增加要因이 된다. 또한 失業率 水準에 따라서 生産人口의 크기도 변화한다.

5) 給與算式 構造上, 本制度는 全加入期間 平均報酬基準으로 給與하는 方式이므로, 最終報酬基準方式보다 財政健全성에 肯定的인 영향을 미친다.

6) 將來의 經濟·社會的 狀況에 따라 給與條件 및 範圍를 制限한다면 財政健全성은 또한 提高될 것이다. 예를 들면, 年金受給時點의 延長, 遺族年金受給資格의 強化(有職業者에 대한 給與制限 혹은 中斷), 夫婦가 同時에 年金受給資格을 取得하는 경우 給與調整 등이 있다.

7) 中途脫落率이 높은 경우 短期的으로는 財政支出이 增加하지만 長期的으로는 年金受給資格者數의 減少와 年金加入期間의 縮小로 財政支出減少要因이 되는데 本制度上 支出減少要因이 더 크다. 中途脫落率과 관련하여 年金에 대한 認識이 문제되는데, 年金受給資格을 取得하는 것이 有利하다는 認識이 낮으면 中途脫落率은 높아질 것이다.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年報』, 1984.
 _____, 『人口 및 住宅센서스』, 各年度.
 _____, 『人口推計資料』, 1986.
 _____, 『6次計劃作成指針』, 1985.
 _____, 『主要經濟指標』, 1985.
 _____, 『韓國의 社會指標』, 1985.
 交通部, 『交通統計年鑑』, 各年度.
 勞働部, 『事業體 勞働實態調查報告書』, 各年度.
 _____, 『產災保險事業年報』, 1985.

_____, 『職種別 賃金實態調查報告書』, 1984.
 Gallup報告, 『各國老人意識調查』, 1983.
 閔載成 外, 『國民年金制度의 基本構想과 經濟社會 波及效果』, 韓國開發研究院, 1986. 9.
 閔載成·朴宰用, 『退職金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韓國開發研究院, 1984.
 閔載成·崔秉浩, 『國民福祉年金의 財政收支推計 및 財政分析』, 韓國開發研究院, 1985. 7.
 延河清·閔載成, 『國民經濟와 福祉年金制度』,

- 韓國開發研究院, 1982.
- 日本 勞働大臣 官房學 勞働統計調査部, 『勞働統計年報』, 各年度.
- 日本 總理部 統計局, 『勞働力調査年報』, 各年度.
- 日本 厚生省, 『厚生白書』, 1985.
- 日本厚生省 年金局, 『年金改革を考える—國民年金法等の一部改正について』, 1985.
- _____, 『目でみる年金』, 昭和 60年.
- _____, 『厚生年金保險・國民年金 昭和55年 財政再計算結果』, 1981.
- 日本厚生統計協會, 『保險と年金の動向』, 1984.
- 韓國開發研究院, 『國內經濟動向主要指標』, 1986. 4.
- _____, 『2000年을 향한 國家長期發展構想』, 1985.
- 韓國經營者總協會, 『企業停年制의 現況』, 1979.
- _____, 『勞働經濟年鑑』, 1985.
- _____, 『賃金實務資料』, 1986.
- _____, 『退職金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1978.
- Chadelat, J.F., “Techniques Applied in the Short-and Medium-term Establishment of Social Security Receipts and Expenditure”,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April 1984.
-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FRBNY Quarterly Review*, Spring 1983.
- Fields, G.S. and O.S. Mitchell, *Retirement,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MIT Press, Cambridge, 1984.
- _____, “The Effects of Social Security Reforms on Retirement Ages and Retirement Incom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5, 1984.
- Fisher, Paul, *Social Security in Korea in the Eighties*, Consultant Paper Series No. 14,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pril-May 1980.
- International Labour Office, *The Cost of Social Security: Tenth International Inquiry, 1975-1977, Basic Tables*, Geneva, 1981.
- _____,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85.
- Palotal, K., *Problems Arising from the Low Level of Invalidity Pensions*, XIXth General Assembly Report X, Geneva: ISSA, 1978.
- Rosa, Jean-Jacques, *The World Crisis in Social Security*, the Fondation National d'Economic Politique and the Institute for Contemporary Studies, 1982.
- U.N., *Demographic Indicators of Countries: Estimates and Projections as Assessed in 1980, 1982*.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79*, Research Report No. 54, Washington, D.C., 1980.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83*, Research Report No. 59, Washington, D.C., 1984.
- World Bank, *1980 World Bank Atlas: Population, Per Capita Product, and Growth Rates*, Washington, D.C., 1980.
- _____, *World Development Report*, 1985.